

##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박용상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I. 서론

언론기본법에 의해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반론권제도는 19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에도 변화없이 계승되었고, 이제 그 제도는 시행후 1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도 금년으로 창립 10주년을 맞게 되어 다수의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처리사례를 집적하여 왔다. 그동안 법원에서도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다수의 하급심판례가 나왔으나 1986. 1. 28. 동 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대법원 판결(85 다카 1973)이 최초로 내려지게 되었다.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경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실시하여 그것이 서독의 반론권제도를 도입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 위 판결이 있기 전에 하급심에서는 동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나머지 그 법적 요건과 판시방법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위 판결 이래 그 판지에 따라 하급심의 판례가 정리되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사례와 법원의 판결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함 과 동시에 논란되는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의 해결책을 살펴 보기로 한다.

### II. 사실주장에 대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

## 1. 상담윤리 관행과 사실주장의 등장부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간물법은 사실보도에 대해서만 반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독일식의 법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사안에서 언론보도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주장인가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된다.

언론계의 관행이나 언론윤리가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 신문의 편집이나 방송의 보도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은 구별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상으로 보아도 신문에 있어서 사실과 칼럼 등 고정적인 안등은 그 자체로 봐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사실보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보통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등 의견을 표현하는 탄에 대하여는 원칙상 정정보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으나, 여타의 모든 기사에 대하여는 일응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논평이나 비판 등 의견표현은 보통 사실관계에 근거하게 마련이고, 선정적인 잡지언론에서는 사실주장과 함께 주관적인 평가나 가치판단이 혼합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내용 중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과의 한계가 모호해지기 쉽다. 이 경우에는 의견과 사실 중 무엇이 전면에서 서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사실주장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은 사심없는 일반독자가 받는 인상이다.

## 2. 입법취지의 검토

우리 법이 의견과 사실을 포함하는 언론보도 중 사실주장에 대해서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에 관하여는 여러 각도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으로 하여금 토론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에 대한 반론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여론형성을 담당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킴이 없이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언론기본법은 반론권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주장에 관해서만 정정보도청구를 허용하고 의견표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독일식의 법제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객관적이지만 의견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주관적인 의견에 대한 반론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반론이 쇄도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반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반론권의 확대는 언론인의 언론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반론만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한다(Seitz /Schmidt /Scho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Verlag C. H. Beck, Munchen 1980, 5. 84).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기본법에 도입되어 정간물법에 그대로 계수된 우리의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일방에 있어서는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불만 제기자에 의해 남용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하면, 타방에 있어서는 언론이 시민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일반적 인격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데에는 무력한 측면을 노출하고 있다. 예컨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필요한데 간혹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없이 허무맹랑한 비방이나 인신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보도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 무력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앞으로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새로운 법 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 3. 사실주장의 태양

#### (1) 명시적인 경우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에 의한 사실주장은 명시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간에 존재할 수도 있고 영화의 인상에 의하는 등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반국가단체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일정 단체를 거명하는 것은 그 단체가 반국가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오해)을 없애기 위하여 또는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상 언론중재 신청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 정제 및 군부에 침투하여 포섭활동을 해오던 간첩망의 검거보조와 함께 경거된 간첩의 사진을 방영하면서 간첩사건과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사진을 아무 설명이 없이 방영하였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해온 사례가 있었다(84 서울중재 1, MBC 간첩사진 보도 사건, 방송사측의 사과문 전달로 신청취하).

또 결혼을 앞둔 미혼녀 양인(신청인들)은 월간 여성지 「마드모아젤사」의 기자로부터 이화여대 앞 카페정경을 취재보도한다는 말만 믿고 촬영에 응해주었는데, 동지는 『혼자이고 싶으면 철저히 준비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독신생활자에게는 고독감을 메꾸어줄 사교적인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신청인 양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87 서울중재 16, 마드모아젤 독신생활사건).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그 실수를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

## (2) 추측보도등

단정적으로 보도되었건 추측에 의한 보도이건 불문하고 보도한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타인의 말을 인용하였다거나 출처를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반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보도에 의하면」 또는 「소식통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어떠한 의심이 있다는 보도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흔히 사실상의 시인적 주장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능성의 추측 또는 암시와 의문의 제기도 같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사심없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받는 인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도에 대한 반론은 이러한 혐의나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 (3) 침묵이 사실주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침묵에 의해서도 사실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도된 특정사안에 관해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특정민의 연관성이 무시된 경우에도 사실주장이 불완전한 것으로서 반론의 대상이 된다. 환언하면 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내용 중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가 불완전하게 되거나 왜곡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입수된 자료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보도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① A, B, C가 함께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였는데 신문이 「A와 B가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면 C는 당해 신문사에 대하여 그도 함께 등정하는 데 동참하였다고 보도하여 달라는 보충적 반론권(Ergänzungsdarstellung)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같은 이치에서 제 2심에서 무죄확정된 사실을 언급함이 없이 특정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하여 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제 2심에서 무죄확정되었음을 보도하여야 한다고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 ③ 「X가 Y에게 총격으로 중상을 입혔다」는 보도에 대하여 Y는 「X가 총격직전에 도끼를

들고 너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총을 팔았다」는 내용의 반론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eitzjschmidtjschnor, 전게서 167 면). ④독일의 판례는 「일정 조사 연구팀의 리더는 K 교수이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그러나 그 작업에는 윈스터대학의 마르크스주의 언론학 모임의 회원이 주로 관여하였다」는 총적 반론권을 허용하였다(OLG Hamburg U. 20. 7. 72 Archiv fur Presserecht 73, 387).

언론중재 신청사례에 나타난 실제상의 예에서도 침묵이 사실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82 서울중재 5(시민법정 택시합승)사건에서는 모 방송사의 택시합승을 주제로 한 시민법정 프로에서 전국자동차 노조연맹 소속의 연구위원으로서 출연교섭을 받은 신청인은 위 프로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연하여 택시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① 택시합승의 부조리, ② 합승행위의 원인, ③ 그 시정책에 관하여 발언하였다. 그러나 실제 방영된 내용에는 택시합승의 부조리에 관한 발언부분만을 발해 보도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연한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발언부분도 방송하라고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 (4) 사전, 만화 등 상형적 표현

정기간행물의 보도는 단어적 표현이 통상이겠지만 그림이나 상형적 표현도 사실관계의 보도로 인식될 수 있으면 반론의 대상이 된다. 그 경우 표준은 일반 독자가 사실관계의 표현이므로 이해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어느 경우든 사진이나 만화에 곁들인 설명이나 문안의 표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진이나 그림이·사실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 기술적 조작에 의한 변조된 사진이 게재되었다면 진정한 사진화면의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도된 교통사고 현장의 도면에 거리의 구조 현상이나 교통신호의 표시가 잘못 그려졌기 때문에 과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가 행사될 수 있다.

작자의 주관적 시각을 희화적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만주나 만평(caricature)은 그 표현기법에 있어서 과장 단순화 왜곡 비유 또는 비난의 방법이 통상 사용되며, 독자들도 애초부터 이러한 표현기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만평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풍자에 의한 표현이 명백히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표현자체가 사실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정보도의 내용은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신청사례 중에서도 만평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만화 「야로씨」에서 「당국:탈락 대학생은」 「당국:밥통대학으로 가라」 「그게 아닙니다」 「당국:정정한다. 방통대(방통대)로 가라」라는 문안을 곁들여 대학정원 탈락생에 대한 문교정책을 풍자한 내용을 게재하였다(<만화 1>참조).

<만화1>



이에 대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총학우회와 총동창회 (신청인)는 위 만화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왜곡하여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83 서울중재 10 및 83 서울중재 11). 위 만화의 표현이 주는 인상에 의하면 문교당국의 정책을 비판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방통대를 밥통대학으로 표시하여 이를 비하 또는 무시하는 가치판단내용과 함께 거기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정규대학의 졸업정원제실시로 인하여 탈락한 자를 수용하는 대학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가 강력히 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판단과 사실주장이 혼합된 보도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대학정원 탈락자를 수용하기만 하는 대학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려는 자학자습의 평생교육장소라는 신청인들의 해명적 사실주장의 보도를 바라는 보충적 반론권 형태의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될 수 있었다. 중재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피신청인이 차일 「야로씨」 만화란 밑에 사과하는 내용의 해명을 게재하고 다시 200 자 원고지 15 매 이상의 분량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대한 별도의 특집 기사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독립기념관 기공식 불꽃놀이에 관하여 중앙일보의 「왈순 아지매」는 시민과 독립기념관 당국자 간의 대화 장면에서 「시민:기념관 당국이죠? 내가 낸 성금으로 벽돌 몇 장을 쌓게 되죠」 「독립기념관:얼마 냈지요? 「시민 :만원요.」 「독립기념관:이미 썼수다. 불꽃놀이 화약 한방에 9천원이오. 평」이라는 대화 내용을 함께 보도한 바 있었다 (<만화 2>참조).

〈만화2〉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신청인)는 국민성금은 독립기념관건립을 위한 직접비에만 지출하고 있고, 기공식 불꽃놀이는 충청남도와 천원군이 그들 비용으로 주관한 행사이며, 국민성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만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국민성금을 당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왔다(83 서울중재 39).

### III. 개별적 연관성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인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에 개별적 연관성을 요한다는 요건에 관해서도 다수의 판례가 나오고 있다.

#### 1. 시인한 사례

①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9. 26 선고 86 카 2875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1987. 3. 18 선고 86 나 4096 판결

모 여성월간지가 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 3 생 어머니 수기』란 제하에 중학생 아들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어머니의 수기를 게재하였는데, 그 이름과 사망한 아들의 이름도 모두 가명을 썼다. 그러나 법원은 「수기에 적시된 필자의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과 아파트 맨 윗층에 거주하는 점 등이 신청인과 일치하여 비록 필자의 성명과 학생의 성명을 다르게 표시하였더라도 신청인을 알거나 위 사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신청인이 쓴 것이라고 능히 짐작케 할 수 있으니」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판시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②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9. 3 선고 82 카 18633 판결

공무원의 불성실 근무태도를 보도하면서 성명을 거시하지 않고 단지 광주시 복구 건축과 임모씨라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편견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그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문제된 사람이 청인임을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7. 29 선고 90 카 41568 판결

기자협회보는 방송구조개편과정에 대한 진상을 추적, 조사보도하면서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방송제도연구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외곽팀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연구소에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K 교수와 현직 MBC 방송인 C 씨……등이 주축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들은 모두가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나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작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왔다. 법원은 방송제도연구위원회나 MBC 에 같은 영문자의 이니셜로 표시되는 사람이 신청인들 이외에 수인이 더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경력이나 평판, 위 기사 보도 직후에 MBC 노조특보가 위 기사를 인용보도하면서 위 이니셜로만 지칭된 민사가 바로 신청인들이라고 밝힌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기자협회의 독자로 예상되는 신문 및 방송기자들로는 위 기사에 이니셜로 지칭된 인사가 신청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 2. 부인한 사례

①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30 선고 84 카 35089 판결은 한 월간 종교지가 행한 예수교 모 노회의 노회장에 대한 비난적 보도에 대하여 소속 노회가 신청인으로 되어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문제된 기사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에 비추어 노회장 개인에 관련된 것일 뿐 그 소속 단체인 노회는 피해를 받은 바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③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8. 18 선고 낙카 62228 판결은 회사명의로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한 사례였는데, 문제된 보도내용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가 아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행태와 언동에 대한 것이어서 회사는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그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IV. 이해관계 일방의 보도와 정정보도 청구

##### 1. 문제점

요즈음에는 기자들의 취재태도도 현저히 향상되어 상반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을 취재하고 보도에 있어서도 쌍방의 주장을 공정하게 반영함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어느 일방은 자기가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음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보도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오는 수가 많다.

종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례 중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장 많이 행사된 유형으로서는 언론이 이해관계 당사자 일방의 이해나 입장만을 취재보도하여 반대 이해당사자가 정정보도청구를 해온 경우이다. 문제가 된 거의 모든 경우는 당사자 중 일방만을 편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경우였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에 있어서도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쉽게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 유형에 대하여는 중재처리실무나 법원의 심리에서도 신청인(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청구권 성립요건 및 반론의 범위와 태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요건과 범위에 근거하여 언론이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보도함에 있어서 방방 당사자의 사실적 주장을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다면 언론의 공공성은 당연히 제고되고, 언론중재자의 공공성 노력도 현저히 향상될 것이다.

## 2. 사례

이러한 사유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온 사례를 보면 예컨대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언론이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든 진정에 의해서든 이를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에 불만을 갖고 반대 이해당사자가 정정보도청구를 행사해 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분쟁에서 당사자 중의 일방만을 취재하여 그 주장을 보도한 경우 (83 서울중재 43, 83 서울중재 44)
- ②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당사자 일방을 편드는 취지의 보도 (84 부산중재 1, 85 강원중재 1)
- ③ 노사분쟁 (85 경남중재 2, 87 서울중재 33)
- ④ 교통사고의 가해자 및 피해자 (84 서울중재 2, 84 충남중재 1)
- ⑤ 의료분쟁 (84 서울중재 40)
- ⑥ 지주와 불법점유자간의 부동산 분쟁 (84 부산중재 1)
- ⑦ 광산업자간의 광구 분쟁 (85 강원중재 1)
- ⑧ 원저자와 번역자간의 표절 여부에 관한 시비(83 서울중재 45)

그럼에도 피신청인측인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의 수용에 인색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신청인들은 언론사의 회유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신청인측의 형식적인 사과표명 또는 해명만을 듣고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재신청사례에서는 이 유형의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에까지 이른 사례가 적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9. 11. 7 선고 89 카 5999 판결(중앙일보 대 일요신문 사건)에서는 일요신문(피신청인)이 파스퇴르유업의 영업 및 광고행태에 대한 중앙일보(신청인)의 비난적 보도로 인해 야기된 9개월간에 걸친 분쟁의 경과를 보도하였는데, 중앙일보측에서는 일요신문(피신청인)의 보도가 편파적으로 부당한 내용만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왔고, 결국 법원에 의해 신청이 인용되었다.

### 3. 이론적 검토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개별적 연관성의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 쌍방의 성명이나 상호가 적시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84 서울중재 8, 교통신보의 주유기업체 과장 PR 사건 참조), 보도의 주대상이 된 일방 당사자의 이름만이 거시되었을 뿐 반대 이해당사자의 이름이 거시되지 않은 경우에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미 보도된 사건은 물론 교통사고와 같이 즉시 보도됨으로써 사건과 이해관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만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해 관심을 갖는 일반독자이면 그 반대 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적 연관성의 인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업체의 하나에 대한 과장 선용보도는 그에 의해 타 상품의 매상에 타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사에게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주간매경(피신청인)이 D 산업에 관하여 페인트원료의 『국산화 선두주자』라는 제하에 과대 PR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경쟁사인 N 산업사(신청인)는 위 기사로 영업상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D 산업에 관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를 신청하였으나, 위 기사에서 N 산업(신청인)에 관한 언급이 없는 한 개별적 연관성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83 서울중재 26 주간매경 과장 PR 사건, 위 사건신청은 중재기일에 취하됨).

둘째로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반대 이해당사자에 관한 사실주장이 있는가의 여부는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의 주장과 보도가 논리적으로 보아 타방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고, 나아가 특정사안의 총체적인 내용 중 일부를 희비함으로써 왜곡이나 오보가 결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해관계 자체를 보도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타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의 은폐 내지 누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충적 반론권의 원인이 되는 사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여기에는 보충적 반론권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위와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반론의 내용이 원문보도의 내용을 부인하는 사실주장으로서 반소적 반론 또는 대립적 반론만으로는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원문보도의 내용이 불완전하여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을 정정보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박용상, 새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87. 겨울호, 64 면 참조).

넷째로 신청취지로 되는 정정보도의 문안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당사자간의 임의적인 화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보통 신청인이나 그가 생산하는 제품에 관해 PR 기사를 게재해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원문보도와 논리적 또는 상황적 연관범위 내에서라면 신청인측의 해명 및 자기 PR을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V. 타인의 말 또는 글의 보도와 정정보도청구

### 1. 서

언론사가 타인의 말을 인용 또는 보도하거나 타인의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특수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 특정인의 발언이나 진술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동인이 행한 발언내용과 그에 관한 보도내용은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 위 양자가 사실주장인가 의견표현인가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되는 물론이다. 이에 대하여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정보도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발언자 자신이 발언내용과 보도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진정한 발언내용대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도된 발언내용에서 언급된 제 3의 피해자가 반론을 제기해오는 경우이다.

### 2. 작자 또는 발언자 자신의 정정보도청구

(1) 기고 또는 회견 자체를 한 일이 없음에도 이름이 도용된 경우에는 당연히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일문일답 독점공개」 「박대통령시해 궁정동 10 26 현장의 여인 S」를 게재한 「주간여성」에 대하여 신청인(5녀)은 누구와도 일문일답에 의해 보도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고 정정보도청구를 해온 경우(87 서울중재 32, 중재결과 차후 발간되는 주간여성 표지에 「S 녀와 일문일답 사실 없다」 고 보도하고 연예파노라마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키로 합의함), 입사체험기를 쓴 적이 없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제 3자의 사진을 넣어 신청인 명의의 입사체험기를 게재한 경우(87 서울중재 37, 중재는 성립되지 않았으나 편집후기란에 고침기사로 정정함)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고 박종철 군의 평전을 쓰다며 신청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을 뿐인데, 「박종철 군의 여자친구 C양의 수기」라고 신청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흥미위주의 왜곡된 사실들을 게재한 경우(87 서울중재 13)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발언내용으로 보도한 것이 실제 발언내용과 다른 경우에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발언내용의 일부를 누락시켜 전체적 발언취지가 왜곡보도된 경우에는 보충적 반론이 청구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전술한 82 서울중재 5, 시민법정 택시합승사건 참조).

텔레비전 드라마작가(신청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이 집필하는 인기 드라마 제 2부의 방영이 늦어지는 이유를 자신의 건강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신청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보도한 주간중앙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85 서울중재 7).

월간 「여성자신」이 무명가수인 신청인을 면담하여 수기를 게재한다고 하여 응하였는데, 동지는 『스타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는 제하에 작곡가의 궤임에 빠져 돈 잃고 몸을 망친 후 밤무대와 술집을 전전하다가 죽음을 생각하며 쓰는 통곡수기라고 게재하면서 신청인이 이야기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날조하여 신청인 명의의 고백수기를 신청인 사진과 함께 게재한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87 서울중재 1, 중재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여성자신」 차월호에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사과 문안이 보도되었음).

(3) 타인의 발언내용에 관한 보도가 매체의 독자적인 평가를 보도했는가 아니면 그 발언내용을 사실로서 보도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작자 또는 발언자 자신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 다카 25468 판결에서는 동아일보(피신청인)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인 K 모 의원이 당정간담회석상에서 『전북도민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원 야당을 뽑았으니 뜨거운 꼴을 보아야 한다』고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전북도민은 그 발언내용에 대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L 모 전 건설부 장관(신청인)의 싹쓸이발언에 이은 제 2의 싹쓸이발언으로 간주하고 갈수록 꼴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L 모씨(신청인)는 자기의 발언이 선거유세장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를 신청하였음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은 위 보도내용은

평가적 요소가 포함된 전북도민의 반응을 보도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루었다. 대법원은 동아일보의 기사 자체는 사실관계인 전북도민의 반응을 보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의견 또는 평가가 아니라 사실주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법률신문 1991. 2. 11 자 제 2004 호 9 면 참조).

(4) 청탁 또는 기고나 투고에 의한 원고게재 또는 강연내용의 편집보도에 관하여 기고자 또는 출연자는 불완전하게 수정 또는 편집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당연한 편집이 예상된 경우 또는 사전에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중요한 점에서 변경이 없는 한 정리를 위한 사소한 부분의 수정과 삭제는 부득이하므로 정정보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고청탁이나 출연계약시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언론사가 형편에 따라 편의적으로 수정과 삭제를 하여 작자의 전체적인 집필의도가 왜곡 전달되거나 중요한 점에서 변경이 가해졌다면 원문대로 보도해 달라는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청학을 받고 제공한 원고내용을 삭제 변경 첨가하여 게재한 경우 변경전의 내용대로 보도하여 주도록 요청된 사안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8. 26 선고 83 카 17754 판결(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 1 집, 1990, 40 면 이하)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일본전문가인 신청인은 월간 「한국인」의 원고청탁을 받고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작성해 주었는데, 동지는 신청인의 양해없이 원고를 개작하여 일본인의 나쁜 점을 지적한 부분만을 게재한 결과 일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상만 줄 뿐, 일본인의 집단 의식과 책임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단결력을 고취시키고 책임 의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려는 원래의 집필 부분은 삭제되어 결국 신청인의 의도가 왜곡되고 일본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오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래의 원고를 다시 게재할 것을 정정보도청구로 요구하였다(83 서울중재 12). 위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민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언론기본법이 예상하지 못한 경우라는 전제하에 사실적 주장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 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 이러한 판지에는 찬성할 수 없다.

### 3. 보도된 타인의 사실주장으로 피해받은 제 3자의 정정보도청구

언론이 타인의 말을 인용 또는 전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매체에 의해 공표된 이상은 그러한 인식이나 주장이 매체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없다.

언론중재신청사례를 보면 통신을 전제한 경우, 경찰조서(85 경기중재 1), 타 기관제공의 보도자료(83 서울중재 7), 타인의 회견내용 속의 사실주장(84 서울중재 15), 고소장(85 서울중재 1), 유령단체의 유인물(87 서울중재 1), 비공식단체의 비리백서(88 서울중재 21), 소문 등을 근거로 보도한 경우 그에 의해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관계자의 정정보도청구가 행해진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그 정정보도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87 부산중재 1 사건에서는 부산 MBC 가 뉴스터미널 시간에 교수 피습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범죄동기로서 피해자(신청인)가 범인의 이혼한 처와 불륜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게 되자, 피해자(신청인)는 10년전에 범인을 취직시켜준 일이 있을 뿐이고 여성관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보도후 피의자도 10년만에 찾아가 동인을 신청인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범죄동기를 진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하급심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만을 보면 모 종교문제연구소의 공문내용을 전제한 것이 문제로 된 경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8. 19 선고 83카9145 판결 및 동 9146 판결), 타인이 기고한 고정 칼럼란에 게재된 내용에 의해 피해받았음을 주장하여 정정보도청구가 되었던 바,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카40175 판결).또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된 사례도 있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7, 선고 89카1151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나30506 판결).

유의할 것은 보도된 타인의 진술 속에 사실과 의견은 구분되어야 하고 사실주장에 한해서만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VI. 행사의 정당한 이익

### 1. 의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형식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언론사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로 보도내용이 사실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고 하여 청구권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룰 수 있고, 둘째로는 그것이 사실보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이 규정하는 구체적 개별적인

예외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며(정간물법 제 16 조 3 항 단서, 동조 제 6 항), 셋째로는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항변을 제출하는 것이다(정간물법 제 16 조 3 항 단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란 신청인측에서 보아 원문보도에 대응할 실질적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재를 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익 흠결의 항변이 피신청인의 입증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반론권의 형식성을 완화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요건을 요하게 하는 사유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측을 위하여는 중요한 항변사유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거의 모든 사례에서 아 예외사유를 원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 2. 구체적 사유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로 학설상 논의되는 사유로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 (1)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관한 정정보도청구

원문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신용에 현저한 타격을 가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자기인식이나 고유한 인격상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그 보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원문보도가 이러한 피해자의 법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됨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 경우 사소하다는 것(bloße Belanglosigkeit)은 신청인이 원하는 바대로의 정정보도를 해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명예회복이나 입장해명에 아무 도움이 될 수도 없을 정도로 사소하여 정보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tt KG, 1986, 5. 423 및 Seitz/Schmidt/Schoner 의 전게서 62 면 이하).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 다카 818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7. 27 선고 85 다카 20576 및 서울고등법원 1986. 2. 25 선고 85 나친 40 판결)에서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는 원문기사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비교하여 판단하되, 양자간에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의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목적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판지에 의하면 문제된 기사에서 본질적 핵심은 교사들이 학교측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으로 항의 농성한 사실과 그무렵 학교측이 그들을 해임하거나 대기발령한 사실임에도 신청인이 바라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시간강사를 평교사로 오보했다거나 징계의 원인이 된 직장 무단이탈의 경위, 농성기간의 상위 등 본질적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위 판지는 신중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란 객관적 목적뿐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여론형성에의 영향만을 표준으로 하여 본질적 핵심에 관한 반론만을 허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이를 배척한다면,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 제도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원문보도에 관하여는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Grundsachverhalt)와 부수적 관계 (Detailsachverhalt)로 구분할 수 있으나 (Wenze 주 전거서, 5. 86, 420) 양자가 모두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 핵심이라는 표현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을 너무 한정하는 것으로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신청 단계에서부터 제 2 심에 이르기까지 위 사건에 나타난 사정을 보면 위 사건은 고등학교 교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야기된 학생소요를 계기로그에 관한 책임추궁으로 교사들에게 내려진 학교법인측의 징계조치와 그에 항의하는 징계받은 교사들의 항의 농성사건에 관한 보도기사가 문제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피신청인의 보도 기사내용을 보면 교사측의 입장과 상황이 비중있게 다루어졌음에 비하여 학교측의 입장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보도된 것을 간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립적인 학원분쟁사건에서 학교측이 징계를 하게 된 연유에 관한 해명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위 사건 분쟁의 추이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로서도 그에 관한 내용의 여하는 당사자간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지 지엽말단적인 것이라고 치부한 위 판지에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85 서울중재 19,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신청사례집 제 4 집, 1985, 76 면 이하 참조).

## (2) 속보에 의한 언론 자신의 정정과 정당한 이익

언론이 스스로 속보에 의해 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으로써 목적하는 상태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어지게 됨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범위와 정도까지 속보에 의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정당한 이익이 없어지는가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례는 이를 상당히 엄격히 해석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역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하급심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언론이 스스로 행한 정정에 의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소멸하려면 ① 이의대상인 보도 자체를 특정 또는 명시하여 ② 원문 보도와 같은 공표효과(기사의 크기와 위치 등)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③ 신청인이 정정보도문으로 구하는 내용(적법한 범위와 내용을 요함은 물론이다)이 모두 보도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①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7 선고 89 카 1151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 나 30506 판결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원문기사의 보도후에 당해 매체가 속보에 의해 전의 보도를 수정하거나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보도한 내용을 특정하여 그 기사가 정확하지 못하였다고 정정하거나 또는 앞서의 보도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 잘못된 기사 전부를 바로 잡은 것이 아니라면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에 정당한 이익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9. 22. 선고 89 카 28545 판결에서는 공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한 문익환 목사의 북경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제목을 붙여 신청인이 마치 방북후 귀국을 원치 않는 들이 보도하였다.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인 조선일보는 이튿날 내주 초췌 귀국하리란 내용의 기사와 3일후 다시 문씨가 일본 망명설을 부인하고 귀국일정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는 문씨 가족의 항의내용을 게재보도한 바 있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측은 정당한 이익의 흠결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앞서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 기사가 정확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이 독자공중에게 이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전에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지를 상대로 제기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신청인이 이 사건 소장에서도 「정정보도청구」라고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 정정보도청구사건으로 불려지게 되었다)에서는 패소하게 되었던 바, 한국일보(피신청인)는 신청인이 패소한 뒤의 사건 판결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 사건명을 「정정보도청구」라고 표시하였음에 대하여 신청인은 종전에 승소한 전자의 사건판결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온 사건이었다.

- o Hanb Kobl, Das Prebsrechtliche Bntgegnungsrecht und seine Verallgemeinerung, Duncker & Humblot, Berlin, 1966.
- o Seitz /Schmidt / Scho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Verlag C. H. Bect Munchen, 1980.
- o Wenzel, Das Recht der Wort – 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tt KG, 1986.
- o 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 1 집, 1990
- o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신청사례집 제 1 집, 1981-1982 내지 제 6 집, 1987
- o 언론중재위원회, 1988 년도 연차보고서.
- o 언론중재위원회, 1989 년도 연차보고서.
- o 박용상,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언론 cla 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81 겨울 창간호.
- o 박용상,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83 여름호.
- o 박용상, "새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87 겨울호.
- o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일반적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89 가을호.

- 저술 : 「출판의 자유와 공적 과업」,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과 프라이버시」, 「방송법제론」 외
- 현재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방송위원회 위원